

##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수출입세에 대한 법령 수행에 관한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3월



### 배경

2016년 9월 1일 수출입세 실행에 대한 제134/2016/ND-CP호 시행령 (“제134호 시행령”)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약 5년 동안 실행된 동 시행령은 세관당국과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왔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제134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제18호 시행령”)을 공표하였습니다. 제18호 시행령은 **2021년 4월 25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 주목할 만한 내용

제134호 시행령에서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륙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규정추가 (제 3 조)
2. 임가공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 기준 명확화 (제 10 조).
3. 수출 생산용으로 수입되어 외주가공을 거치는 물품 및 특정 내륙 수출입에 대한 면세 규정 추가 (제12조)
4. 투자 인센티브 적용대상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 기준 추가 (제14호)
5. 수출가공기업(“EPE”)에 대한 세관 조사, 감독 조건 및 조세 정책 적용에 관한 규정 추가(제 28a 조)
6. 세관당국의 관리 및 마스터 리스트에 따른 수입세 면제 제품 확정신고에 관한 상세 규정 추가 (제31a조)
7. 재수출해야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환급 조항 강화(제 34 조)

##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수출입세에 대한 법령 수행에 관한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3월



### 주목할 만한 내용

#### 1. 내륙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제 3 조)

**제 1항:** 내륙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율 적용 규정이 제3항에 따라 보완된다.

**제 3항:**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비관세구역에서의 내륙 수출품은 제122/2016/ND-CP호 시행령 및 제 57/2020/ND-CP호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관세율이 적용된다.
- 내륙 수입품(비관세구역에서 수입하는 경우 제외)은 제125/2017/ND-CP호 시행령 및 제57/2020/ND-CP호 시행령에 따른 MFN 우대수입세가 적용된다.
- 비관세 구역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된 물품은 규정에 따라 각 경우별로 MFN, FTA, 일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 2. 임가공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 근거 (제 10 조)

**제 1항 g:** 수입 자재로만 가공하여 해외로 수출되거나 또는 정해진대로 내륙 수출되는 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 관세가 면제된다.

**제2항 :** 임가공 제품의 면세 근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제공한다.

- 기업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가공 시설 및 기계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기업이 임가공 계약, 재가공 계약 및 계약 부록을 관세 당국에 통보;
- 기업이 임가공 시설이나 임가공 계약을 관세법의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관세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만을 받게된다.

**제4항 :** 임가공 목적으로 수입된 폐기원료, 폐기물 및 원자재, 초과 자재의 비율 (3%)에 대한 규정 삭제

**제5항 :**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에 외국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상품 배송 지정서 사본 1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수출입세에 대한 법령 수행에 관한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3월



### 주목할 만한 내용 (c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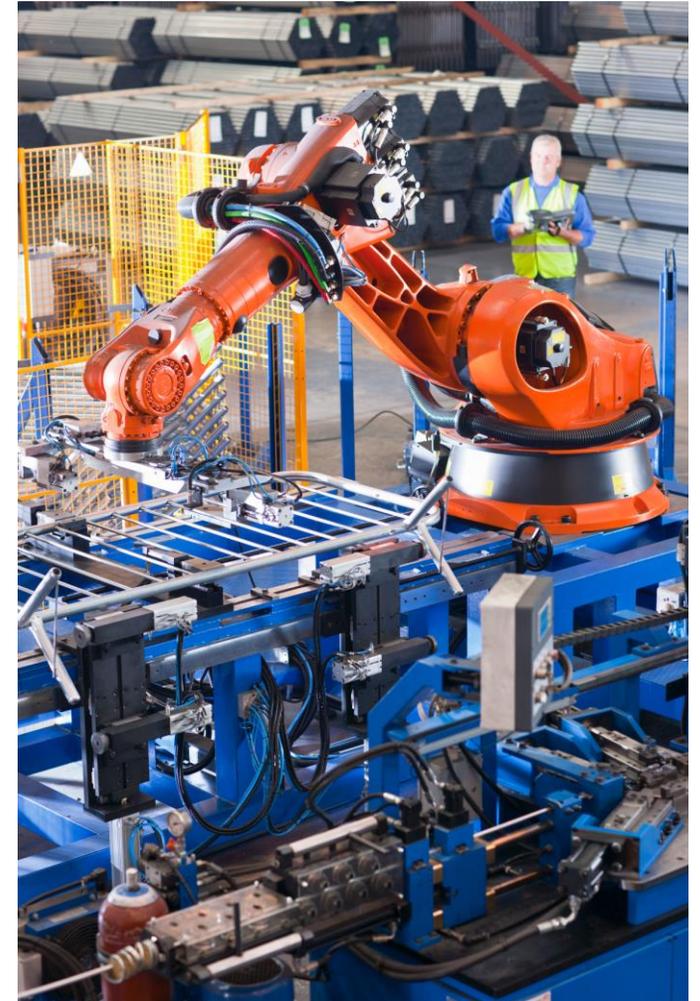
#### 3. 수출 생산용으로 수입되었으나 아웃소싱 된 물품에 대한 면세 기준 및 내륙 수출입의 경우에 대한 면세 근거 (제12조)

**제1항 d** : 수출용으로 수입된 물품의 베트남내 폐기가 허용되며 실제로 폐기된 경우 수입세가 면제된다.

**제2항**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수출용으로 수입되었으나 아웃소싱 된 물품에 대한 면세 기준 (a, b)
- 내륙 수출자의 책임: 내륙 수출자는 내륙 수출 신고서가 통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세 신고 정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면 수출자는 내륙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를 납부하고 세관 신고를 재수행해야 한다. 수입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철저히 수행할 경우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e).
- 내륙 수출품은 수출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g)
- 임가공을 위한 내륙 수입품의 경우 규정을 충족하면 수입세가 면제된다. 임가공 이외에 다른 형태의 내륙 수입품은 수입세를 납부해야 하며, 외국/비관세 구역으로 수출시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다 (h).

**제3항** : 내륙 수출자의 경우 반드시 외국 단체 또는 개인의 베트남 내 상품 배송 지정서 사본 1 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수출입세에 대한 법령 수행에 관한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3월



### 주목할 만한 내용(cont.)

#### 4. 투자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프로젝트의 고정 자산을 구성하는 수입 재화 면세 기준 (제14조)

제6항: 투자 지역, 지원산업 또는 투자 규모에 따른 면세 적용 대상 판단 기준을 명시

#### 5. 수출가공기업 (EPE)에 대한 세관감사, 감리 및 세제 처리에 관한 조건(제28.a조)

제28a조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보완된다:

- 세관 조사 및 감리 목적의 EPE 요구사항:
  - 외부 구역과 EPE 지역 구분을 위한 펜스 및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재화는 해당 출입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 CCTV가 모든 출입구 및 창고에 설치되어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작동해야 하며 CCTV 시스템은 관할 세관당국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고 데이터는 12개월간 보관되어야 한다;
  - 세관당국 보고 목적으로 관세 면제 수입품에 대한 입고-출고-잔고 상태 관리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한다.
- 세관 조사 및 EPE 또는 EPE 프로젝트의 세관 심사 통과 인증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행된다:

-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허가서 (IRC) 발급 신청 시;
- 확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허가서 수정 발급 신청 시;
- Non-EPE의 EPE 전환 신청 시;
- 신규/확대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은 투자 허가서 (IRC), 수정된 투자 허가서 또는 투자 허가서가 필요 없는 경우에 투자유관기관에 의해 발급한 문서에 수출가공기업 (EPE)으로 인식되는 시점부터 비관세 구역에 대한 조세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 투자 허가서 발급 시점부터 세관당국에 의해 제 82/2018/ND-CP호 시행령 및 본 시행령에 따른 세관 조사, 감리 조건 충족에 대한 인증 시점까지 비관세 조세 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사 및 감리 조건 충족 후 회사가 납부한 세액은 조세관리법상 과납세금 처리 규정에 따른다.



##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수출입세에 대한 법령 수행에 관한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

2021년 3월



### 주목할 만한 내용(cont.)

#### 6. 세관 당국의 관리 및 Master List에 따른 수입세 면제 재화 사용에 관한 확정 신고 (제31a조)

제31a조는 master list에 따른 수입 면제 재화의 신고 및 감사를 자세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 매년 회계연도말로부터 90 일 이내에 단체와 개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세 면제 재화 사용 현황에 대한 확정 신고서를 master list를 신고한 지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전체 프로젝트가 종료되거나, 모든 재화가 베트남 밖으로 재수출되거나, 재화의 사용목적이 변경되거나, 내수용으로 판매 또는 폐기되었을 시에도 해당 지역 세관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입세가 5년간 면제되는 원자재, 소모품 및 부품(제15조), 그리고 의료 기기 제조 및 조립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소모품 및 부품 (제 23 조)의 경우 수입세 면제 재화 사용에 대한 확정 신고서를 프로젝트 시작일로부터 5 년동안 매해 제출해야 한다. 5년간의 면제기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미사용 수입세 면제 원자재, 소모품 및 부품에 대한 세관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원자재 및 소모품을 수입하여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 제조 공정 완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세관 당국은 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여러번에 걸쳐 수입되어야 하고 개별 수입물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생산라인 또는 결합물의 경우 결합물 또는 생산라인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당국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은 제31.1조에 따라 설치 완료일 이후 매년 재화 사용 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 7. 재수출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환급 (제34조)

**제1항, a :** 재화의 소유주에게 수출되거나, 해외 또는 비관세 구역으로 수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입품이 재수출 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관세환급 규정을 명시하였다.





##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Making an impact since 1991

#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